

2025년도 제5회 예산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

2025년 제5회 예산군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년 7월 30일

예산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업무

채용직렬	임용등급	인원	근무기간	근무부서	담당업무
운전	일반임기제 (9급) 주40시간	1명	최초 임용일로 부터 2년	예산군의회 의정팀	○ 관용차량 운행,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○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

2. 근거법령

- 가.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나.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다.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라.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
- 마.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자격 요건

가. 공통요건 (모든 적용 기준일 : 면접시험 최종일)

- 성 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)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인 자(2007.12.31. 이전 출생자)
- 거주지제한 : ❶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당해 면접시험 최종일)까지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,
❷ 2025년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
 - ※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,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함
 - ※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거주지를 제한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(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 제외)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시점에 근무 가능한 자

나. 응시자격 :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

- ※ 최종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 (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)

다. 우대사항

-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 경력자(운전경력증명서 확인)
 - ※ 운전면허 벌점, 교통법규 위반 등은 감정 요건에 해당함
- 정부 및 공공기관,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기관장 및 대표자 전용차량 운전경력이 있는 자
-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(자동차 정비, 검사관련 자격 소지)

라. 응시결격 사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되거나,
- 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4. 보수 수준

임용분야	임용직급	보수예정액 (2025년도 기준)	비 고
운전	일반임기제(9급)	하한액 36,980천원	주 40시간 (8시간/1일)

※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35조 제3항에 따른 금액

※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
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함. 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)

※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
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
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.(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)

5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○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
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각종 검증·확인으로 합격자 결정

○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
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※ 응시원서 접수 시 인적성 검사 병행 실시(약 30분 소요)

※ 서류전형 기준 ※

- ① 자기소개서 평가
- ② 직무수행계획서 평가
- ③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
- ④ 응시자격 : 관련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자
 - *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대형승합·대형 화물·대형특수자동차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)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
 - * 재직(경력)증명서 상에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운행차종, 승차인원 등 증명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
- ⑤ 감점요건 :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(최근 5년간)
 - * 위반 횟수에 따라 감점으로 적용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
- 소통.공감(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), 헌신.열정(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), 창의.혁신(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), 윤리.책임(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)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(4개의 평정요소를 상, 중, 하로 평가)
-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
- ※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6. 시험시행 일정

가. 응시원서 교부

-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)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

나. 채용 공고

- 공고 기간 : 2025. 7. 30.(수) ~ 8. 11.(월) [12일간]

다.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5. 8. 6.(수) ~ 8. 12.(화) [7일간]

- 근무시간(09:00~18:00)내에 접수하며, 중식시간(12:00~13:00)은 제외합니다.

○ 접 수 처 :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(인사담당자)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
라. 인적성 검사

○ 검사시기 : 응시원서 제출 시 인적성 검사 실시

○ 소요시간 : 평균 약 30분 소요

○ 주요내용 :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

※ 인적성 검사 미 응시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※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작성한 인적성검사는 자체 폐기함

마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○ 2025. 8. 18.(월) 예정,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공고
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.시간.장소 등 안내

바. 면접시험 : 일시·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

○ 2025. 8. 20.(수) 실시할 예정이나 변경될 수도 있으니 시험 일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람

사. 최종합격자 발표일 : 8. 21.(목) 예정

7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

① 응시원서 1부. (별지서식1)

※ 응시수수료 : 5,000원(예산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판매)

② 이력서 1부. (별지서식2)

③ 자기소개서 1부. (별지서식3)
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. (별지서식4)

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.

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 (별지서식5)

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(별지서식6)

⑧ 주민등록 초본 1부.(남자일 경우 병역사항 기재)

※ 전체 주소이력이 나올 수 있도록 **원 초본으로 발행**

⑨ 운전면허증 사본 1부.(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)

⑩ 운전경력증명서 1부.(경찰서 발행)

※ **공고일 이후**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,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

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경력으로 하여 발급

⑪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. (별지서식7)

※ 근무기간·직위(급) 및 담당업무,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할 경우만 인정

※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

나. 우대사항

①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.

◆ **제출서류**는 발급확인을 할 수 있도록 **공고일 이후**에 발행 된 것이어야 하고 **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**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 된 증명서 등은 **공증을 필**하여야 하며, **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**합니다.

8. 재공고 및 변경공고

-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함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에 예산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함

9. 최종합격자 결정

- 가.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
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함
- 나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
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순위에 따라
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9. 기타 사항

- 가. 응시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
접수하시기 바람
- 나. 예산군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
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
- 다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
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
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라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, 기재착오·누락,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
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.
- 바.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
신원조회, 채용 신체검사,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
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사.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(☎041-339-7802)으로
문의